

화성우체국 공고 제 2017-48호

보통징계위원회가 우정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으로 행정효율과
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(등록), 제37조(재등록 및 폐기),
제39조(공고)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20일

화성우체국장

□ 관인 폐기 연월일 : 2017년 12월 20일

화성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인

